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인

제2019-152호 2019년 8월 13일(화)





보

시정지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공 고

O 여수시 공고	제2019-1987호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3
0 여수시 공고	제2019-1989호	장기 미착공 건축하가 취소 청문실시 알림 공사송달 공고	5
0 여수시 공고	제2019-1993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창무리 327-16)	6
O 여수시 공고	제2019-2006호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7

_				
회				
라				

여수시 공고 제2019-1987호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8.13.

여 수 시 장 (인)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Ę	면 적(m²)	최 초	비고
	七	번 호	시설명	종 류	7 1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Ę	변경	64	광 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여수시 묘도동 2020번지 도 일원 (묘도교차로)	99,396	감)7,363	92,033	전남고시 제2014-247호	자연 녹지 지역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64	광장	· 구역 변경 - 면적 :99,396㎡→92,033㎡ 감)7,363㎡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광장 구역계 일부 제척 및 교통광장에 대해 세분화 함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7 H	도면표시	2 0 H	시설의	۵۱ =۱		면 적(m²)		최 초	w) =
구분	번 호	공원명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A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역사공원	여수시 묘도동 410번지 일원	_	증) 29,661.2	29,661.2	_	자연녹지지역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А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29,661.2㎡ - 위치 : 묘도동 410번지 일원	이순신 장군과 수많은 조명 연합수군 전몰자의 순국의 뜻을 기림과 기념비적인 장소로 계획하고자 하며, 한중일 삼국의 화합과 동북아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묘도지역 성역화 도모하기 위해 역사공원으로 조성 하고자 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구분	주요시설내용	부지면적(m²)	구성비(%)	비고
	합 계		29,661.2	100.0	
	시설 소계		12,773.1	43.1	
공	공원관리시설	도로, 진입광장, 주차장	4,754.7	16.1	
원 시	휴양시설	쉼터	337.9	1.1	
설	교양시설	조명기념원, 조명화합마당, 조명체험마당	6,751.9	22.8	
	편익시설	휴게쉼터	928.6	3.1	
	기타	녹지	16,888.1	56.9	

나. 세부시설 조서

) N 7 7 H	E मे ज रो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n) =
시설구분	도면표시	(m²)	(%)	건축면적(m²)	연면적(m²)	층수	비고
합계	_	29,661.2	100.0	100	100	1	
시설소계	_	12,773.1	43.1	100	100	1	
공원관리시설		4,754.7	16.1				
중심로		579.2	2.0				
진입로-1		1,252.0	4.2				
진입로-2		1,090.7	3.7				
진입로-3		292.1	1.0				
조명승전길		628.5	2.1				
진입광장	1-1	284.9	1.0				
주차장	1-2	627.3	2.1				
휴양시설		337.9	1.1				
쉼터	2-1	337.9	1.1				
교양시설		6,751.9	22.8				
조명기념원	3-1	2,422.5	8.2				
조명화합마당	3-2	2,764.8	9.3				
조명체험마당	3-3	1,564.6	5.3				
편익시설		928.6	3.1	100	100	1	
휴게쉼터	4-1	928.6	3.1	100	100	1	
기타		16,888.1	56.9				
녹지	5-1	16,888.1	56.9				

다. 도로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838.3	3,842.5				
소로	소	계		838.3	3,842.5				
"	2	1	8.0	72.4	579.2	산책로	소3-3	조명기념원	
"	3	1	7.0	178.9	1,252.0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	3	2	4.5	140.0	628.5	산책로	진입광장	조명기념원	
"	3	3	3.0	326.8	980.3	진입로	부지경계	소2-1	
"	3	4	3.0	20.2	60.4	산책로	소3-3	휴게쉼터	
"	3	5	3.0	16.6	50.0	산책로	소3-3	소3-3	
"	3	6	3.5	83.4	292.1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쉼터	

- 3.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광장)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 4.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 5. 공고기간: 2019. 8.13.~ 2019. 8.27.(14일간)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19 - 1989호]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등기우편으로 건축허가취소 청문실시통지서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3. 처분원인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령여부 확인이 않됨

4. 처분대상

신고변호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m²)	층수	동수	주용도
2013-건축과-신축허가-291	지원종합건설㈜	여수시 광무동 521-4번지 외 37필지	657.72	1	7	단독주택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13.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9 - 1993호]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327-16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화양면 창무리 327-16	13.5	3	78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13.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과태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의거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여 수 시 장

- 1. 공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8. 27.(15일간)
- 3. 공시송달 내용
- 위 공고기간이내에 '여수시 도시미화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이의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 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여수시청 도시미화과(여수시 여서1로 101, 2층 ☎ 061-659-3835, fax 061-659-5824)

2019. 6. 불법투기 적발 사전처분 과태료 대상자(반송분)

Cath	LLHTIM	I LH TI T I	Həldik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부과대상
1	이*찬	여수시 자산2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2	김⋆길	여수시 양지*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3	점⋆권	여수시 미평로77,***호(***,*****)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4	감*원	여수시 소라면 가사안길**,*동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5	미*무	여수시 신기북7길 **, ***동 ***호(***, **A)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6	김*선	여수시 신기북7길 **, ***동 ***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7	김*서	여수시 대치 2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8	김*남	여수시 신윌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9	박*영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0	조∗아	구레군 구례읍 동산2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1	김*임	여수시 충무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2	김*찬	여수시 시청동4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3	김*훈	여수시 시청동5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4	감∗순	여수시 흙산로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5	김*일	며수시 문수4길 ** ⁻*, * 층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6	정⋆철	여수시 학동서3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7	김⋆문	며수시 시전3길 *-*, * 층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8	임*	며수시 쌍봉로 177 <i>,</i> ***동***(***,*****)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19	김⋆숙	며수시 안산6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20	주∗준	여수시 소라면 상세동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21	조≠희	여수시 남산북8길 *-*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